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3판

2022. 2. 14.

중앙방역대책본부

목 차

Ⅰ. 사업개요 ····· 1

□ 법적근거 ····· 1

Ⅱ. 지원내용 ····· 1

□ 지원대상자 ····· 1

□ 개정지침 적용 ····· 1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1

□ 지원기준 ····· 2

Ⅲ. 신청방법 및 절차 ····· 3

□ 신청방법 ····· 3

□ 처리절차 ····· 4

Ⅳ. 행정사항 ····· 4

【 별첨. 관련 서식 】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5
2.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현황 ····· 6
3.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안내문 ····· 7
4.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8
5.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조회 회신 ····· 9

〔참고1〕 관련 법령 및 고시 ····· 10

〔참고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 12

〔참고3〕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 ····· 14

주요 변경사항

[지침 3판은 전면개정 지침으로 전후대비표 생략]

구분	종전		현행	비고 (사유 등)
지원대상	•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 변동없음	
지원단위	• 격리 근로자 개인	➪	• 변동없음	
지원인원	· 격리 근로자 본인	➪	• 변동없음	
지원금액	• 격리 근로자의 일급(日給) - **일 13만원**까지 정부 지원	➪	• 변동없음 - **일 7만3천원**까지 정부지원	日 최저임금 고려
지원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받은 자 등	➪	• 변동없음 - 단, **어린이집은 삭제**	공공성,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지원제외 예외	•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시** 별도 판단없이 **예외 지원**	업무 단순화
지원제외 판단.적용	• 격리 근로자 본인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 변동없음	
격리자 정보확인	• 신청자자 제출한 격리통지서 • 보건소 통보 명단	➪	• 변동없음 - 격리자 정보는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조회자료로 갈음** 가능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예정
격리일수 인정	• 실제 격리된 일수대로 지원	➪	• **입원·격리통지서 상에 기재된 '격리시작일'부터 '격리해제일' 까지를 원칙으로 함** * 기간 변경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격리통지 필요	업무 단순화
해제전검사 미실시자 지원일수	• 당초 격리기간까지만 지원	➪	• **입원·격리통지서**에 **기재된 일수대로** 지원 * 변경통지를 받은 경우 변경된 일수대로 지원	업무 단순화
1개월 초과지원	• 1개월 상한액+1개월 초과일수 일할계산액	➪	• 동일건 격리통지의 경우, 격리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14일까지만 지원**	업무 단순화
신청기한	• 격리해제후 (제한없음)	➪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산집행 제고, 이월 최소화

I 사업개요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

○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3호(2022.2.14.)

II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개정지침 적용

○ '22. 2. 14.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격리통지 일자는 원칙적으로 입원·격리 통지서 상 '격리시작일'로 함

(예시) 격리 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는 2.13일에 받았으나 입원·격리 통지서 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이 2.14일인 경우
→ 2.14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 **'22. 2. 13.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 대상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인 경우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지원기준

○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 를 제공한 일 수

* 입원·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 일수 ×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73,000원)

- 1건 격리통지에 대한 지원일수는 격리통지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14일임

Ⅲ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신청자)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공단 지사 주소 및 연락처(첨부)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구비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안내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서식 제4호)
-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 생략
-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서류 1부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식 제1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통장사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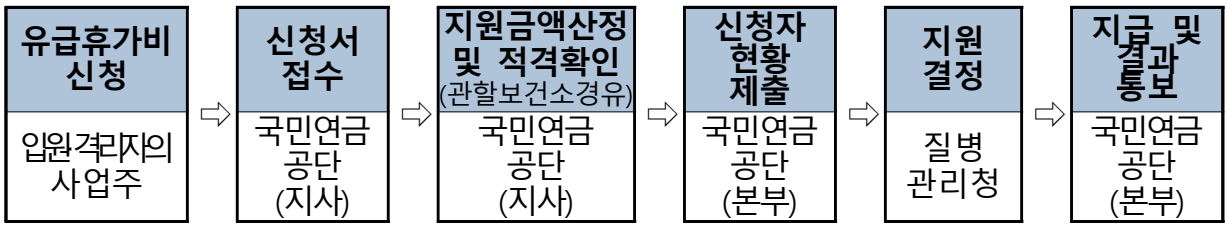

Ⅳ 행정사항

○ (국민연금공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세부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접수, 지급, 사후관리 등 업무 대행

- 신청서 접수,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산정하여 질병관리청에 지원신청현황* 제출 및 지원 결정 통보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급 등

  *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 및 지급 결정 현황(엑셀) 제출[서식 제2호]

- 유급휴가비용 신청자의 “격리기간” 및 “해외입국 격리자 여부” 등을 관할 보건소 확인 요청[서식 제5호] 후 지급제외 등 요건을 확인하여 지급

- “해외입국 격리자” 지급 제외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 관련 사업장 별도 홍보 실시

○ (보건부서) 유급휴가비용 확인 요청[서식 제5호] 회신

- 대상자 인적사항, 격리기간 현황에 “해외입국 격리자”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

- 방역수칙 위반자* 통보는 해당자에 대해서만 표기해서 제공

  * 방역수칙위반은 당해 격리기간 중 발생한 위반에 한하며, 당해 격리와의 직간접적 인과관계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지급대상자 전체 명단에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모두 표기할 필요 없음

○ (질병관리청) ”지원대상 여부“ 및 “해외입국 격리자” 정보 등 확인하여 최종 지급결정

별첨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개정 2020.12.30.>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업주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격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격리 세부사항	입원·격리 시작일	입원·격리 종료일	
	총 입원·격리기간 ( )일		
	대상 감염병명		
	입원·격리 종류	[ ] 의료기관 입원·격리 [ ] 자가 격리	
	의료기관 입원·격리인 경우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산출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보상금 산정	→	결 정	→	지 급
신청인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2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현황

연번	사업주					입원·격리자					지급 결정액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주명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격리 기간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은행	계좌 번호	예금주	지급액

[서식 제3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 지원, □ 미해당] 안내문

<table>
<tr><td rowspan="2">신청자</td><td>사업장명</td><td></td><td>사업주명</td><td></td><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2">입원·격리자</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격리기간</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td><td></td></tr>
<tr><td rowspan="4">지원결정내용</td><td rowspan="3">□ 지원</td><td>지원종류</td><td colspan="2">유급휴가비용</td><td>지원금액</td><td></td></tr>
<tr><td>지원기간</td><td colspan="5">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일)
※ 위 지원기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유급휴가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간을 의미합니다.</td></tr>
<tr><td>지원안내</td><td colspan="5">• 귀하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 유급휴가 지원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신청하신 계좌로 지원금액이 지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후 해당 근로자가 동 기간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하며, 사후조사 결과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td></tr>
<tr><td>□지원미해당</td><td>미해당사유</td><td colspan="4"></td></tr>
</table>

□ 귀하가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정보는 유급휴가비용 신청 적격확인 업무에 한하여 활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의 전화번호 :

[서식 제4호]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라 근로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사업장명		사업주명	
근 로 자		근로자 생년월일	
유급휴가 기간(일수)	~ (일)	유급휴가 사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1. 사업주는 위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 등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2.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사유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지 않았고 향후에도 지원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3. 만일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사업주 : (서명)

근로자 : (서명)

[서식 제5호]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조회 회신

(엑셀로 작성)

귀 연금공단이 조회 요청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조회요청 대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제출) 격리통지서		보건소 확인		해외입국 격리자 (Y/N)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회신기관 : ○○○시군 ○○○보건소

참고1 관련 법령 및 고시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시행 2022. 2. 1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3호, 2022. 2. 14., 일부개정]

제1조(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73,000원 적용
2.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준용하되, '가구구성원 수'는 '가구내 격리자 수'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2-0호, 2022. 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격리 통지된 입원·격리자부터 적용한다.

<참고>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3호, 2021. 12. 31., 일부개정]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이하 생략>

참고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격리 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

참고3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

시도	지사명	관할구	연락처	주 소
서울	서울북부 지역본부	서대문구, 마포구	02-2176-9821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6, 9층, 13층 충정로사옥 (충정로3가)
	종로중구	중구, 종로구	02-397-9590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5층 (충무로3가)
	동대문중랑	동대문구, 중랑구	02-920-0612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 6층 경복빌딩 (신설동)
	성북강북	성북구, 강북구	02-901-2870	서울 강북구 도봉로 314, 6-7층 삼성화재빌딩 (번동)
	도봉노원	도봉구, 노원구	02-2211-2850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2, 8층 KT노원지사빌딩 (상계동)
	성동광진	성동구, 광진구	02-3408-6664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63, 3층 대한제지사옥빌딩 (광장동)
	송파	송파구	02-3433-5831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6층 국민연금공단 (신천동)
	강동하남	강동구, 하남시	02-480-8829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02, 8층 강동웨딩KDW (성내동)
	서울남부 지역본부	강남구(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02-3416-6040 02-3416-6036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8, 국민연금강남회관(논현동)
	강남역삼	강남구 (서울남부지역본부 관할구역 제외)	02-2186-405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8층 (역삼동, 카이트타워)
	서초	서초구	02-3415-0950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3층 엘타워(양재동)
	관악	관악구	02-6934-2050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4층 경동제약빌딩 (봉천동)
	구로금천	구로구, 금천구	02-2085-1459	서울 금천구 벚꽃로 286, 2층 리더스타워오피스텔 (가산동)
	영등포	영등포구	02-2629-2372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 5층 동양타워빌딩 (당산동4가)
	강서	강서구	02-2086-7103	서울 강서구 강서로 463, 3층 새싹타워 (마곡동)
	은평	은평구	02-350-5552	서울 은평구 통일로 742, 3층 한화생명빌딩 (불광동)
	양천	양천구	02-6345-9010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81, 9층 해누리타운 (신정동)
	용산	용산구	02-6220-220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 4층 LS용산타워 (한강로2가)
	동작	동작구	02-6935-8401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0, 8층 기독교 TV 멀티미디어센터 (노량진동)

시도	지사명	관할구	연락처	주 소
부산	부 산 지역본부	부산진구, 연제구	051-797-7070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4층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연산동)
	중부산	중구, 동구, 영도구	051-660-3260	부산 중구 충장대로 7, 3층 교보생명빌딩 교보생명보험(주) 중앙동사옥 (중앙동4가)
	서부산	사하구, 서구	051-290-3541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27, 10층 삼성전자빌딩 (하단동)
	북부산	강서구, 북구	051-603-1150	부산 북구 기찰로 12, 4층 이수타워 (덕천동)
	동래금정	동래구, 금정구	051-550-7519	부산 동래구 명륜로 82(수안동)
	남부산	남구, 수영구	051-793-1011	부산 수영구 수영로 688, 1, 2층 국민연금공단수영사옥 (광안동)
	동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051-610-6310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7층 센텀임페리얼타워 (우동)
	부산사상	사상구	051-792-5331	부산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10, 2층 하이에어코리아부산사무소 (괘법동)
대구	대 구 지역본부	달서구	053-589-4561	대구 달서구 성서로 419, 2층 국민연금대구회관건물 (이곡동)
	서대구	서구, 북구	053-380-3040	대구 북구 옥산로 111 6층(칠성동 2가, 대구은행제2본점)
	동대구	동구	053-430-7891	대구 동구 동촌로 1, 5층 동대구우체국 (입석동)
	대구수성	수성구, 중구, 남구	053-750-9192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1층 KB손해보험대구빌딩 (범어동)
	대 구 달성고령	달성군, 고령군	053-470-1511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3, 1,2층 KT달성빌딩 (현풍면)
인천	남동연수	남동구, 연수구	032-451-0811	인천 남동구 성말로 20, 3층 국민연금인천회관 (구월동)
	서인천	서구	032-560-0501	인천 서구 서곶로 284, 3층 새터빌딩 (심곡동)
	부평계양	부평구, 계양구	032-500-8102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15층 한화생명빌딩 (부평동)
	남인천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770-3502	인천 남구 경인로 351, 7층 한화생명빌딩 (주안동)
	김포강화	김포시, 강화군	031-8048-1313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81, 2층 (장기동)
광주	광 주 지역본부	서구, 광산구	062-958-2050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51, 1층 국민연금공단광주사옥 (우산동)
	동광주	동구, 남구, 화순군, 곡성군	062-230-0760	광주 동구 금남로 154-1, 8층 아모레퍼시픽빌딩 (금남로5가)
	북광주	북구, 담양군, 장성군	062-520-8160	광주 북구 무등로 239, 10층 한국시멘트빌딩 (중흥동)
대전 세종	대전세종 지역본부	세종특별자치시	044-715-161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50(아름동) 1,4,5층
	서대전	서구, 논산시, 계룡시	042-480-4871	대전 서구 문정로 6, 4층 (탄방동)
	동대전	중구, 동구, 금산군	042-720-4030	대전 중구 중앙로 119, 14층 삼성생명빌딩 (선화동)
	북대전	대덕구, 유성구	042-670-1020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27, 4층 우성빌딩 (오정동)

시도	지사명	관할구	연락처	주 소
울산	남울산	남구, 울주군	052-226-2132	울산 남구 중앙로 179, 4층 한화생명빌딩 (신정동)
	동울산	중구, 동구, 북구	052-290-6131	울산 중구 번영로 470, 5층 중울산새마을금고빌딩 (반구동)
경기	경인 지역본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031-229-4082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19, 3층,4층,9층 국민연금공단 수원사옥 (인계동)
	안양과천	안양시, 과천시	031-420-2001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20층 지스퀘어 (호계동)
	성남	성남시	031-778-028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4층 코리아디자인센터 (야탑동)
	이천여주	이천시, 여주시	031-630-7901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3, 5층 하나빌딩 (중리동)
	평택안성	평택시, 안성시	031-659-0821	경기 평택시 평택2로 34, 3층, 5층 삼성생명 (평택동)
	안산	안산시	031-481-774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 2층 삼성화재안산사옥 (고잔동)
	광명	광명시	02-2610-2820	경기 광명시 철산로 5, 3층 융창빌딩 (철산동)
	부천	부천시	032-610-2348	경기 부천시 신흥로 179, 12층 한화생명빌딩 (중동)
	고양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031-920-545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3층 KT프라자 (마두동)
	고양덕양	고양시 덕양구	031-927-3211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4로 7, 5층 (원흥동)
	의정부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031-828-3647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62, 2층 삼성생명빌딩 (의정부동)
	구리남양주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031-550-5820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8, 14층 한화생명빌딩 (교문동)
	용인	용인시	031-288-1301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6번길 9-21, 명지대입구방향 역삼동주민센터뒤 (역북동)
	화성오산	화성시, 오산시	031-229-6036	경기 화성시 병점2로 6, 5층 금강빌딩 (병점동)
	시흥	시흥시	031-488-2760	경기 시흥시 정왕대로 188, 5층 한국산업은행 (정왕동)
	군포의왕	군포시, 의왕시	031-390-8021	경기 군포시 산본로 404, 3층 대주빌딩 (산본동)
	파주	파주시, 개성공업지구	031-956-3611	경기 파주시 새꽃로 1, 3층 파주우체국 (금촌동)
	포천철원	포천시, 철원군	031-540-8049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5층 송우웰빙타운 (소흘읍)
	경기광주	광주시	031-8026-3030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214-1, 2층 정민빌딩 (송정동)
	북수원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031-8007-2207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50번길 30, 2층 KT수원지사 빌딩 별관 (영화동)

시도	지사명	관할구	연락처	주 소
강원	강릉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033-640-9310	강원 강릉시 경강로2224번길 12(포남동)
	춘천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가평군	033-259-7760	강원 춘천시 남춘로 20, 국민연금춘천회관 5,6층 (퇴계동)
	원주	원주시, 평창군, 영월군	033-749-8430	강원 원주시 시청로 32 (무실동)
	삼척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033-571-2120	강원 삼척시 하실길 58, 국민연금회관 삼척체육관 맞은편 (교동)
	홍천	홍천군, 인제군, 횡성군	033-439-5411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4, 3층 KT홍천사옥 (홍천읍)
충남	천안	천안시	041-550-891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60, 국민연금공단천안지사 (청당동)
	홍성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041-630-813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47, 2-3층 대왕빌딩 (홍성읍)
	보령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041-930-6630	충남 보령시 동현로 27, 국민연금공단 보령회관 (동대동)
	공주부여	공주시, 부여군	041-850-3820	충남 공주시 한적2길 27-5(신관동)
	서산태안	서산시, 태안군	041-419-3011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3로 60, 5층 동일타워 (예천동)
	아산	아산시	041-420-2310	충남 아산시 충무로 22, 2-3층 (온천동)
충북	청주	청주시	043-251-512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2번길 20, 4층 국민연금공단청주지사 (서문동)
	충주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043-840-0704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242, 국민연금공단충주지사(금릉동)
	옥천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043-730-2730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96, 4층 하나로타워 (옥천읍)
	증평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043-820-7111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33, KT증평사옥 1층 (교동)
전남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061-240-3301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6층 KT목포사옥 (호남동)
	해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061-530-2301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16-16, 국민연금해남회관 (해남읍)
	순천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061-729-3001	전남 순천시 팔마로 334, 국민연금순천회관 (연향동)
	여수	여수시	061-660-5530	전남 여수시 공화북2길 24, 국민연금회관 (공화동)
	나주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061-820-0001	전남 나주시 나주로 21, 1층 KT나주빌딩 별관 (송월동)
전북	전주완주	전주시, 완주군	063-270-537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1-3층 국민연금빌딩 전주회관 (서신동)
	익산군산	익산시, 군산시	063-850-0322	전북 익산시 인북로12길 42, 익산회관 (주현동)
	정읍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063-530-5801	전북 정읍시 충정로 97, 국민연금정읍회관 (상동)
	남원순창	남원시, 순창군	063-620-3410	전북 남원시 의총로 116, 국민연금공단 남원회관 (동충동)
	진안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063-430-3501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25, 국민연금진안사옥 (진안읍)

시도	지사명	관할구	연락처	주 소
경남	창원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창녕군	055-278-904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4, 국민연금 창원지사 (신월동)
	김해밀양	김해시, 밀양시	055-320-8344	경남 김해시 가락로 58, 4층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 (부원동)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055-650-8521	경남 통영시 광도면 신죽3길 16(광도면)
	진주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055-760-0637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56(신안동)
	마산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055-290-4532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11층 한화생명빌딩 (석전동)
	거창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055-940-451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56, 국민연금공단 거창회관 (거창읍)
	양산	양산시	055-371-1530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1-3층 국민연금 양산회관 (물금읍)
	사천남해	사천시, 남해군	055-830-0811	경남 사천시 용현면 대밭담로 13(용현면)
경북	경주영천	경주시, 영천시	054-770-3920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4층 KT경주지사 (성동동)
	포항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054-280-0838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8층 KT포항지사 (대도동)
	안동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054-850-9010	경북 안동시 광명로 211, 국민연금공단안동지사 (옥동)
	문경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054-550-3301	경북 문경시 매봉로 45, 국민연금공단문경지사 (모전동)
	구미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054-450-8530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5, 2층 국민연금 구미지사 신한금융투자 (송정동)
	영주봉화	영주시, 봉화군	054-639-8011	경북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2~4층 (영주동)
	김천성주	김천시, 성주군	054-420-1611	경북 김천시 시청로 137, 3층 김천상공회의소 (신음동)
	경산청도	경산시, 청도군	053-722-5010	경북 경산시 경산로 154, 6층 KT경산빌딩 (사정동)
제주	제주	제주시	064-720-4160	제주 제주시 청사로3길 11-1, 국민연금 제주사옥 (도남동)
	서귀포	서귀포시	064-800-4511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5층 축산업협동조합 (동홍동)